



2024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정정공고 [수요자제안형[기관] 1차]

2024년 5월 22일
조달청장

혁신시제품이란?

- ◆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로 지정신청한 **상용화 직전 제품(또는 ‘제품+서비스’)**이 혁신시제품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지정기간(3년) 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수요자제안형) ①**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②**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과제를 제안받아 발굴된 과제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품공모를 통해 혁신시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이나,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만료일자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면제
-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의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3-34호(‘23. 7. 21.))

1

대상과제(지정분야) · 지정대상 · 신청자격

□ 수요자제안형 제도

- ◆ 공공수요는 ①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②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과제를 제안받아 발굴된 과제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시제품 공모

□ 대상과제(지정분야)

○ 아래 70개 제안과제 중 선택하여 신청, 각 과제의 상세내용은 별첨 수요명세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과제들은 1년간 공고되며, 수요기관의 과제가 해결될 경우 또는 중단(취소) 요청 시 차기 공고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방독면 세척을 위한 초음파 살균세척기” 과제 제외(수요기관 요청)

유형 (기존 분류 기준)	과제명	관련기관 등
수요기획 개발형 (32개)	IoT 기반 자동 온도 모니터링 의약품 냉장고 도입	국방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식기세척 자동화 시스템	국방부
	스마트 혁신 유류운영 시스템	국방부
	고글형 열화상 카메라	청사관리본부
	건물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분석관리시스템(BEMS) 및 에너지절약 최적 제어 시스템 구축	청사관리본부
	국공유지 불법 점유 추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상남도(통영시)
	무인항공기를 통한 효율적 해양지역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경상남도(통영시)
	재선충 감염 수목 추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장비 개발	경상남도(통영시)
	개인 전투피복 레이어링 체계	국방부
	안티드론 시스템	국방부
	순찰용 다족보행로봇	국방부
	AI를 활용한 군 장병 원격진료 서비스	국방부

유형 (기존 분류 기준)	과제명	관련기관 등
	자동염수 살포장치	국방부
	현장정보 수집, 분석, 공유를 위한 이동형 지원·지휘 차량	국방부
	ESS 및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	소방청
	소방용 웨어러블 로봇	소방청
	고속도로 교통분석, 시설물 점검을 위한 차량 탑재형 다목적 유무선 겸용 드론 시스템	한국도로공사
	드론공격으로부터 시설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한국수자원공사
	해수담수화시설 농축수 및 탈수슬러지 친환경 처리 기술 개발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 아크 화재 검출 장치	한국수자원공사
	에버네스트 통신을 이용한 밀폐공간 내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한국수자원공사
	안전관리 스마트 글라스 시스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용 강관 자동용접 시스템	한국수자원공사
	해상 유류오염사고 위치추적 장비 개발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 충전을 이용한 버스정류장 조명 시스템	세종도시교통공사
	스마트 공영유료주차장 AI 통합·연계 플랫폼 구축	안산도시공사
	노상주차장 무인 정산 자동차 입·출차 시스템	안산도시공사
	IoT센터 탑재 카스토퍼를 활용한 실시간 주차면 감시	안산도시공사
	보행자 보호 운전자 경보 시스템 도입	안산도시공사
	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자가처리 시스템	세종특별자치시
	중량물 취급업무 수행 로봇	국방부
	동력형 중량물 상하역 보조슈트	국방부
	임진강 수색정찰용 AI 무인수상정 도입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고성능 감지기 장착 주둔지 경계용 드론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유형 (기존 분류 기준)	과제명	관련기관 등
수요자제안 재도전과제 (39개)	인공지능 이미지인식 무인지게차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전기차 충전시 주차요금 정산기와 자동 연계 할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화재 발생시 어둠속에서 소화기 위치 확인 가능 제품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지하시설 자율탐사 로봇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1인 산업장비용 안전박스 설치 세트 보급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원스텝 시설물 안전점검 소프트웨어 개발	부산시설공단
	지능형 안전점검 드론 개발 및 비행관리 플랫폼 구축	부산시설공단
	발열온도에 따라 표면색상이 변화되는 동파방지열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공급관리소 한전 인입전원 전력품질 안정화시스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노외주차장 IoT기반 타이어 마모도 측정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부식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현장 판넬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작업상태 원격감시용 스마트 안전점검 도어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비상발전기 배터리 전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정부청사 EMP 방호 탐지장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산불진화드론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무선 인공지능 예초기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공공기관 모듈형 전자동의서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IoT망을 이용한 무선 원격 가스누설 검지시스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밀폐공간 작업용 소형 경량 공기호흡기	부산환경공단중앙사업소
	현장근로자용 웨어러블 안전 디바이스 개발	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사업단
	드론탑재형 UV/IR 불꽃감지기TESTER 및 설비점검용카메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메탄가스 등 가스감지 자율주행 무인 로봇 개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무선 조종이 가능한 체인블럭 개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유형 (기존 분류 기준)	과제명	관련기관 등
	유해동물 기피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지능형 법보행 시스템 특화된 무인감시 시스템	안산도시공사
	방독면 세척을 위한 초음파 살균세척기(수요기관요청으로 과제삭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공간의 제약이 없는 협잡물 이송장치	부산환경공단 서부사업단
	오수 중계·맨홀펌프장용 최적 수위계 개발	부산환경공단기장사 업소
	각종재난 시 장애인 이동 핸드레일 피난 유도선	양주시공사
	안전그네 일체형 안전띠 미체결 알림 스마트 안전조끼	부산환경공단 정관사업소
	송풍기 장착 드론을 이용한 지붕 및 옥상의 낙엽 제거	안산도시공사
	완전자율주행 보행기	(주)한국가스기술공 사
	설비별 수명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주)한국가스기술공 사
	CCTV형 적외선 가스검지기 개발	(주)한국가스기술공 사
	사업장 안전관리 통합 솔루션(software, App) 개발	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사업단
	능동형 안전장비	(주)한국가스기술공 사
	자율주행 방역로봇을 이용한 전동차 방역업무 개선	대전광역시도시철도 공사

□ 지정 대상

- ①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① 개발완성수준(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 공인) 有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예)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有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 단계) 예)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가, 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함(증빙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가.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나.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 ※ 단, 벤처나라 등록물품을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신청 시,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까지 허용

< 유의사항 >

1.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제품+서비스 포함)은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 제안서의 「**3**공공성-**5**규제」 작성 시 예상되는 규제 요소 및 극복방안(예: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명확하게 제시
2. 심사 및 지정 제외
 - 가. 신청 제품의 물품식별번호가 '기지정 혁신(시)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물품식별번호와 동일한 경우
 - 나.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탈락한 횟수가 **4회**에 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제안 불가

□ 신청 자격

- 제안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서,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① 단독 참여: 제조 설비를 보유한 경우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나.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여 혁신시제품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는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② 협업체 참여: 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가. 추진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여 혁신시제품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는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나. 참여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자

< 유의사항 >

1. 특허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 확인

-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출원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

2.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시, 약정서(공고서 별첨 서식) 제출

③ 공동수급체 참여 : ‘신산업기술개발제품’에만 해당

가. 참여대상 : ‘신산업기술개발제품’으로 결정된 ①로봇, ②자율주행차,

③ 수소기술, ④무탄소전원 ⑤우주산업'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참여 허용
※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2조 제17호에 의하여 결정

① (로봇)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준 '로봇' 제품 또는 '로봇'이 핵심기술로 적용된 제품

②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운송수단(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

• 자율주행 기술은 3단계(Level 3) 이상 적용된 제품만 대상

③ (수소기술) 수전해, 수소충전소, 수소차량, 액체수소 운송선,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터빈, 암모니아 합성·분해, 수소 저장·배관, 수소엔진 등 수소기술이 핵심기술로 적용된 제품

④ (무탄소 전원)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이 핵심기술로 적용된 제품

⑤ (우주산업)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관련 제품

※ '정책지원' 분야에 한해 위의 3가지(③~⑤)는 소재·부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 허용

⇒ 로봇, 자율주행차, 수소기술, 무탄소 전원, 우주산업 핵심기술 적용 여부는 '지적재산권' 등을 통해 반드시 입증해야 함

나. 지정신청 방식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지정신청('별지16호'를 지정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권리(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협정서에 따르며,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입찰참가등록증으로 확인

※ 지정신청기업은 '협정서' 제8조의 분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 비율 기재 요망,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시 반드시 필요)

- 신청자격의 예외 적용 -

1. 제조물품 입찰참가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 기한 내 상기 신청자격의 '①항 가호'와 '②항 나호'에 따른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의 제조물품 입찰참가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지정 신청 가능
- ☞ 단, 이는 혁신시제품 평가 대상에 포함될 뿐 평가이후 지정 절차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지정신청서 제출과 병행하여 제조물품 입찰참가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절차 추진 필요
- 물품식별번호 미발급 업체는 혁신장터 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 시 공고에 첨부된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
 -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 건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

2. 특허·실용신안 권리(전용실시권리자,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

- 출원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는 신청 불가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 ☞ 해당 기술이 출원 중이라 하더라도 '기술이전 업무협약서' 제출로 지정신청 가능. 이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대상에 포함될 뿐이므로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지정 가능

2

신청 기간 및 추진 일정

□ 신청 기간

○ 접수 마감일시: '24. 6. 27.(목) 18:00시까지

회차	신청기간	지정분야
제1차	'24. 5. 20. ~ '24. 6. 27.	70개 대상과제

※ 접수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과제 중 일부는 수요기관의 과제 해결 또는 수요기관의 중단(취소) 요청 시 차기 공고 과제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마감일에는 신청 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공고에 첨부된 지정양식이 아닌 임의양식(카탈로그 포함)으로 제출한 경우, 제안서 또는 규격서를 공란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려대상(보완요구 없음)**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내 접수완료된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별도 통지**),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단, 당초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 곤란한 경우 해당 자료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보완서류 중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백지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미제출로 간주

※ 자료 작성 및 제출 전 첨부된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일정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항 목	내 용	세부일정
업체	제안 접수	제안서, 규격서 접수	5.20. ~ 6.27.
조달청	서류 검토	제출 제안서, 규격서 보완	6.28. ~ 7.15.
	시제품 평가	혁신시제품 평가	7.18. ~ 8.14.
업체 / 조달청	2차 서류 제출 현장실태조사 등	현장실태조사 등 2차 서류 제출	8.16.~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9월말 ~

※ 혁신시제품 지정은 별도의 일정이 없는 경우, 각 분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결정

3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혁신장터 → 혁신기업(바로가기 버튼 클릭)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 해당공고건 선택 → 신청

4

신청 서류

※ 지정양식은 공고 상세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장터 → 혁신기업(바로가기 버튼 클릭)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 해당공고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

- 필수 제출 서류(반드시 모두 제출)

가. 해당 권리증(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 **3종**
- 등록번호별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반드시 제안제품에 적용된 국내특허 또는 국내실용신안만 제출

※ 혁신시제품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권리에 대해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나. 혁신시제품 제안서(공고서 별첨 1)

다. 혁신시제품 규격서(공고서 별첨 2)  규격서 내 견본 참조

- 당해 제품의 특징점에 대해 기술,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 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1차 추가 제출 서류(해당할 경우 제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 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 제출

가. 특허 등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공고서 별첨 3)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 등 출원 중인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다. **협업체**: **협업승인신청서**(공고서 별첨 4)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지정기간 3년을 고려하여 협업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사 제품 중 혁신시제품 신청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기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이 있는 경우: **기술·성능 비교표**(공고서 별첨 5)

- 비교표에 기존제품 규격서 첨부 필수

- 협업체는 참여기업(제조기업)이 상기내용에 해당할 경우 제출

마. **공동수급체 협정서**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에 해당하는 **신산업기술개발제품**(①로봇, ②자율주행차, ③수소기술, ④무탄소전원, ⑤우주산업)에 대하여 [별첨6]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시제품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평가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제출서류)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확인서, 사업개시확인서, 확인서 발행 기관 공문 등**

☞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제출한 제안서가 수요명세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려함을 안내드립니다.**

□ 2차 서류(공공성, 혁신성 평가 모두 합격 업체만 제출)

가. ‘조달연구원’에서 규격 검토를 완료한 ‘최종 규격서’

※ 최종규격서는 조달연구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동 보고서는 특허기술진흥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다. **상용화 요건 증빙 서류**

① 매출원장

-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신청기업의 전체제품 매출 내역)

-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원장,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시험성적서: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매출원장 제출 기준>

- 제안제품의 **최초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발행일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 * 제안서 '②제품정보-②주요기능과 성능' 중 '객관적 근거' 항목에 기술한 시험성적서 기준
- 단,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자료 등 **발행 이전에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유의사항>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시 제안서 '4. 혁신성 - ②제품의 탁월성 - ③적용기술'에 표기한 **모든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특허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최종 지정 가능

5 지정절차 및 지정평가

□ 지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 검토 → (서류통과업체) 공공성·혁신성 평가 → (최종합격업체) 2차 서류 제출 및 검토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 및 지정

□ 혁신시제품 평가(1차공공성 평가, 2차혁신성 평가)

- (공공성 평가) 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 및 규격서'로 서면 심사
- (혁신성 평가)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 대상업체는 평가 당일 총 20분 간 대면평가 진행

*** 혁신성평가 대상업체는 공공성평가 통과 후 개별로 연락 예정**

- 대면평가 시간 : 총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자료는 제안서 「2. 제품정보(10페이지 이내)」로 한정함
-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

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제출서류) 참석자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1부(반드시 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으로 제출),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전략물자(드론 등) 품질경쟁력 제고 위한 평가 관리강화 안내>

- ※ (드론 평가 관련) 드론의 품질강화 방안으로 혁신시제품 혁신성 평가 시, 평가 현장에서 실물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기업의 제안서 발표 시간은 15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은 15분으로 진행함.
- 혁신제품 지정 시, 필수 시험항목을 규격서에 반영하여야 함
- : 경로비행·경로비행시간 등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반영

※ 혁신시제품 평가 결과 조회 방법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업체 : 혁신장터 로그인 → 상단 혁신시제품 지정 → 좌측 (업체)지정신청조회 → 평가결과조회 탭 →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
- 그 외: 혁신시제품 평가 합격 확인
혁신장터 접속 (로그인 불필요)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 지정합격발표

6 기타

□ 동 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34호(‘23. 7. 21.))」에 따르며, 공고기간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일반사항	신성장조달총괄과	042-724-7224, 7664, 7420, 7217
대상과제	(재)한국조달연구원 수요기획팀	070-4304-2396, 6851, 5904, 5901
신청문의	(재)한국조달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	02-6951-4072, 070-4304-2397, 070-4304-2394

□ 별도첨부

혁신장터 → [업체]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

- ① 혁신시제품 수요자제안형 제안서(별첨 1)
 - ② 혁신시제품 규격서(별첨 2-1, 2-2)
 - ③ 약정서(별첨 3)
 - ④ 협업승인신청서(별첨 4)
 - ⑤ 기술·성능 비교표(별첨 5)  제출 시 기존제품 규격서 반드시 첨부
 - ⑥ 공동수급체 협정서(별첨 6)
 - ⑦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별첨 7)
 - ⑧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FAQ(별첨 8)
 - ⑨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 매뉴얼(별첨 9)
 - ⑩ 혁신시제품(유형2) 신청 시 유의사항(별첨 10)
-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에서 확인

□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1단계 공공성 평가(적부판정)					
공공적합성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여부		▪ 수요기관 요구사항 부합 여부	통과/ 미통과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개발완성수준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2단계 혁신성 평가(정량평가) - 공공성 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실시					
혁신적합성 (50점)	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20	
	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 보통 개량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20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10	
시장성 (30점)	시장규모		▪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15	
	파급성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15	
시범사용 수행역량 (20점)	수행역량		▪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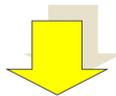
< 혁신시제품 평가 절차 >

- (1단계. 공공성 평가) 세부항목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경우 통과
- (2단계. 혁신성 평가)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 세부항목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 통과

①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제조물품 등록 및 ② 물품식별번호 부여에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은 업체의 준비서류 및 담당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처리기간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목록과
 온라인 신청: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세부품명번호 10자리 제조물품으로 등록)
 ▶ 콜센터, 조달청 등록팀, 각 지방 조달청 경영관리과
 ▶ 온라인 신청: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세부품명 10자리 제조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문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제조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등록

- 콜센터 1588-0800
- 조달청 등록팀(070-4056-7507, 7189, 7162)
- 각 지방 조달청 경영관리과

☞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목록과(070-4056-7271, 6463, 7182, 7257)

※ **온라인 신청방법:**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 매뉴얼 참고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